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7호 2022. 5. 23.(월)

조 례

\bigcirc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bigcirc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4
\bigcirc	목포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bigcirc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bigcirc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bigcirc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bigcirc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고	<u>시</u>	
		<u>'</u>	
\bigcirc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	36

회람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권 한 대 행 강 효 석

목포시 조례 제 3586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액공제) ①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1
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	
서 1장당 <u>150원</u>	<u>500원</u>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	2
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	
우: 고지서 1장당 <u>300원</u>	<u>1천원</u>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목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강 효 석 천 한 대 행

목포시 조례 제 3587 호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 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항로 중 2년 연속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이 단절된 항로를 말한다.

목

- 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 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항중인 항로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 2. 유류비
 - 3. 선박수리비
 - 4. 감가상각비
 - 5. 그 밖의 운항경비
 - ③ 시장은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하여 운항손실금 산출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3조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 항목 및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여 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항결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 2. 연륙교 연결,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으로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 3. 수송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수 있게 된 때
-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 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 제7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 사항의 준수 여 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자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보

- 제9조(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운항결손액을 거짓 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 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시장은 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강 효 석 권 한 대 행

목포시 조례 제 3588 호

목포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 포시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귀농어업인 ·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영어계획을 세우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귀촌 인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귀농어업인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과 안 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 2. 귀농어·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 3.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임대·휴경농지, 어장 등 정보제공 및 알선
 - 4.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에 관한 적 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귀농어·귀촌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1. 당연직 위원 : 귀농업인 지원업무 및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 과장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어업 관련 대출기관 관계자 및 농ㆍ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 나. 농업인학습단체, 농 · 어업인단체 대표

목

- 다. 귀농어 귀촌단체 관계자
- 라. 마을 통장
- 마.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귀농어 관련 전문가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과 귀어·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심사
- 2.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
- 3.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4. 귀농어업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목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2022. 5. 23.(월)

목

제11조(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 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47호

2022. 5. 23.(월)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강 효 석 천 하 대 행

목포시 조례 제 3589 호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단체의"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단체"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단체의"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로 하고,
같은조 제4호의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중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를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의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의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를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과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관련단체"로 하고,

같은조 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사료비 등 지원 사업

라.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혅 했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 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농업경업기법 개 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 · 홍보 활동
-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그 밖에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 서 정한 단체로 한다.
 -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신 설>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 정 안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

1. <u>농업인 및 농업관</u>련단체의 ---

2.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

4. ---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 기준은 ---

- 1. ----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과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관련단체로 ----
- 2. (현행과 같음)
- 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 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사료비 등 지원 사업

라.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강 효 석 권 한 대 행

목포시 조례 제 3590 호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3조에 따라 목포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및 컨설팅"을 "제93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감사")"를 "(이하 "감사"라 한다)"로, "(이하 "시장"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을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 "컨설팅")"을 "(이하 "컨설팅" 이라 한다)"로, "법 제 93조에 따라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법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업무"로하고, "컨설팅"을 "자문·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한다. 제3조 중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컨설팅 할 수 있다."를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감사·컨설팅 요청서"를 "감사 요청서"로, 같은 조 제5호 "감사 •컨설팅 요청 사항이 감사대상"을 "감사·컨설팅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 3. 그 밖에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컨설팅 신청서
- 2. 그 밖에 컨설팅 요청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③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 요청 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감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는"을 "감사 및 컨설팅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반 및 컨설팅 반을 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감사 및 컨설팅 반을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 및 컨설팅 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주무과장이 되고 반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및 컨설팅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문관의 임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중 "감사 및 컨설팅 반은 감사 및 컨설팅"을 "감사반은 감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감사"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중 "감사 및 컨설팅 결과"를 "감사 결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대 상 단 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 중 근 시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요청인대표	생년월일		[건커근 포	
	주 소			
동의 세 대 수			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 사 대 상	※입주자대표회의	니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시	무소장의 업무 / 선기	H관리위원회의 업무
감 사 요 청				
사항 • 사유				
	※ 감사 요청의 위	l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	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 감사 요청 사	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	·송 유무 및 참고가 ·	될 수 있는 정보
「목포시	·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현	한 조례」제5조제	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	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u>요</u>	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감사 요청 2. 관련 증빙			

제1547호

[별지 제2호서식]

목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지명: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1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서

신청분야	□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신 청 자	성 명 (상 호) 연락처		신청 □ 입주 구분 □ 관	-자대표회의 주체		
	단 지 명:					
단지 현 황	단지주소:					
신시 선정 -	동 수: 개동	최 고 층:	츳			
	세 대 수:	사용검사일:				
관리주체	□ 자치관리	□ 위탁관리('	업체명:)		
컨 설 팅 신청사항	※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						
붙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	의 회의록(컨설	팅 신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

1. 대성	상단지 :				(?	감사분0	‡ :		,)
2. 감시	2. 감사기간 :									
3. 감시	·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9	의 견
 ※확인	 민서(증거자료	 . 포함) 별	첨							
	도개선 및 건 <u></u>									
			20	년	월		일			
		조사자 :	감사	반원	성명			(인)		
		확인자 :	감사	반장	성명			(인)		
목포	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서

1. 공동주택명: 3. 컨설팅일시:	2. 단지위치: 4. 참 석 자:
컨 설 팅 분 야 	
컨 설 팅 결 과	
컨 설 팅 총 평	
	20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	제1조(목적)
법」제93조에 따라 목포시 공동주택	제93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
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및	택관리업무 컨설팅
<u>컨설팅</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u>이하</u>	1(<u>া</u> ট্ট্
<u>"감사"</u>)"란 목포시장(<u>이하 "시장"</u>	<u>"감사"라 한다</u>)" (<u>이하</u>
<u>라 한다</u>)이「공동주택관리법」(이	<u> "시장"이라 한다</u>)이
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u>등을</u> 조사·점검·확인·분석·검	
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이하	2(이하 "컨
<u>"컨설팅")</u> "이란 시장이 <u>법 제93조에</u>	설팅"이라 한다) 공동주택
따라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	관리업무
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	
을 법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처리한	
<u>업무</u> 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	
토하여 <u>컨설팅</u> 하는 것을 말한다.	<u>자문 • 권고</u>
3 "간사단단자"라 자체간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을 말하다.

4.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이란 공동 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해 감사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목포 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에 대하여 감사·컨설팅 할 수 있다. 제4조(제외대상) (생 략)

1.~3. (생 략)

4. 감사·컨설팅 요청서에 법령 위반 |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감사ㆍ컨설팅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 및 컨설팅 요청) ① 공동주 2항에 따라 시장에게 감사 및 컨설팅 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 임하여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컨설팅 요청서 3. (삭 제)

4. (삭 제)

제3조(감사 및 컨설팅 대상) 시장은 법 제3조(감사 및 컨설팅 대상) 시장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 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범 위 내에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다.

제4조(제외대상) (현행과 같음)

- 1.~3. (현행과 같음)
- 4. 감사 요청서-----

- 5. ---- 감사·컨설팅 대상-----

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93조제 제5조(감사 및 컨설팅 요청) ① 공동주 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 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 및 컨설 팅 요청인 연명부 원본

목

- 4. 그 밖에 감사 · 컨설팅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대 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컨설 팅은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건에 대해서만 감사 및 컨설팅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등이 특별히 감사를 요 구하는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5 년 이내의 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 다.
- 제7조(감사 및 컨설팅 실시) ① (생략)
 -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 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9조(감사 및 컨설팅 방법 등) ① 감 |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 명부 원본
- 3. 그 밖에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 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컨설팅 신청서
- 2. 그 밖에 컨설팅 요청 시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자료
- ③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 요청 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 및 컨설팅 실시) ① (현행 과 같음)

2	 	
	 감/	사

③ (현행과 같음)

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제9조(감사 및 컨설팅 방법 등) ① 감 사 및 컨설팅은 -----

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및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② (삭 제) 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에는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감사 및 컨설팅 반 구성 및 운 제10조(감사 및 컨설팅 반 구성 및 운영) 영) ① 시장은 감사·컨설팅 등을 위 하여 감사반 및 컨설팅 반을 5명 이 내로 구성한다.

- ② 감사 및 컨설팅 반원은 감사담당 자와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을 감사 및 컨설팅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감사 및 컨설팅 반장은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업무 담당과장이 되 고 반원은 공동주택 감사담당자가 된 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 등) ① (생략)

② (생 략)

1. ~ 2. (생략)

<신 설>

- ① ----- 감 사 및 컨설팅 반을 7명 이내로 구성한 다.
- ② 감사 및 컨설팅 반의 반장은 공동 주택관리 주무과장이 되고 반원은 소 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으 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삭 제)

제11조(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및 컨설 팅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 는 경우
-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제11조의2(자문관의 임기) 자문관의 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 설>

목

제12조(증거서류 확보) <u>감사 및 컨설팅</u> <u>반은 감사 및 컨설팅</u> 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증명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감사 및 컨설팅 결과 처리) ① 감사 및 컨설팅 반은 감사 및 컨설팅 한은 감사 및 컨설팅 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④ (생략)

- ⑤ 관리주체는 <u>감사 및 컨설팅 결과</u>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관리주체 등은 <u>감사 및 컨설팅 결</u> 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증거서류 확보) 	<u> 감사반은 감사</u>
	거기 리기 (1
제13조(감사 및 컨설팅 	
	<u>감사 결과</u>
⑥—————	 <u>감사 결과</u>

현	행	개	정	아
<u> </u>	U		0	_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		
요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대표	생년월일		U-10x		
"	주 소				
<u>동의인수</u>	<u>동의인수</u>	총: 명 (남:명/여:명)	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사대상	※이즈기레고하이이 어므 / 과기즈체 과기치므스자이 어므 / 서				
감사요청	※감사 요청	의 원인이 되는 법령	위반 사항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되	
사항•사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목포/	시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지	레5조 제1항	
에 따라 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	정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당 귀하				
첨부서류	_	인 연명부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컨설팅 요청서

신 청 <u>구 분</u>	□ 관리행정 □ 회기 ※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계관리 □ 시설행정_			
신 청 자 (입주자대표)	대표자	연락처			
입대의의결일	년 월 일	일			
구 분	□ 의무관리대상	□ 비의무관리대상			
工工	관리소 연락처 :				
	단 지 명 :				
디지원회	단지주소 :				
단 지 현 황	동 수 : 개동	최고층 : 층			
	세대수 :	준공일 :			
관 리 주 체	□ 자치관리	□ 위탁관리			
신 청 사 유 (컨설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방(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u>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u> (인)					
목포시장 구	<u>관리사무소장</u> (인) 목포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회약 (컨설팅 신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대 상 단 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 0 = '	주 소			
0 = 0	성 명		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	생년월일		신화단호	
41 11	주 소			
<u>동의세대수</u>			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 사 대 상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 관리사무	소장의 업무 /
	감 사 요 청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사항 • 사유	되 내용이 많을	불 경우 별지 작성	1	
기 타 **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기 될 수 있는 정보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그 감사 및 1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리	ŀ 관계 서류를	를 첨부하여 위	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Ŧ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감사	요청인 연	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현행 별지 제3호서식)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지명:

	시청					
연번	<u>성</u>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요청인 연명부 □단지명:

연번	성 명 <u>(남/여)</u>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현행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서

신청 <u>분야</u>	□관리행정 □회계관리 <u>□장기수선 □기타</u>						
신 청 자	<u>성 명</u> (<u>상 호)</u> 연락처	신 청 <u>□ 입주자대표회의</u> 구분 <u>□ 관리주체</u>					
	단 지 명:						
단지현황	단지주소:						
디시턴등	동 수: 개동	최 고 층: 층					
	세 대 수:	사용검사일:					
관리주체	□ 자치관리	□ 위탁관리 <u>(업체명:)</u>					
<u>컨 설 팅</u> 신청사항	※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 [.]	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일					
<u> 신청자 : (인)</u>							
목포시장 귀하							
붙임서류	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u>업무</u> 감사결과보고서

1. 대상			(감사분야	: :)
2. 감사	•				
3. 감사	·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확인	서(증거자료 포	함) 별첨			
4. 제도	개선 및 건의사	항			
	20 년] 월	일		
		_	_	,	-1)
	조사자 : 감사반				인)
-	확인자 : 감사반	장 성	명	(인)
목포	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

1. 대상 2. 감사							
3. 감사	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							
 ※확인	서(증거기	자료 포	함) 별 [:]	<u></u> 첨			
4. 제도	개선 및	건의사	항				
		20 년	Ç	<u> 월</u>	일		
3	조사자 :	감사반	원 성	성명		(인)
	확인자 :	감사반	장 성	성명		(인)
목포	시장	귀하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서
	1. 공동주택명: 2. 단지위치: 3. 컨설팅일시: 4. 참 석 자:
	컨설팅분야
	컨설팅결과
	컨설팅총평
	20 년 월 일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강 효 석 권 한 대 행

목포시 조례 제 3591 호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3항 중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혂 행 아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 ③ 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불구하고 임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 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경감할 수 있다. 있다.

제375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강 효 석 권 한 대 행

목포시 조례 제 3592 호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수관"이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수탁자"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안

정

개

-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는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수탁자는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수탁자는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혅

행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생 략) 1. "전수관"이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생 략) 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1. (생 략) 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1. (생 략)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는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 서 가능하고, 수탁자는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시 제 2022-9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붙임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12-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	전라남도 목포시 까치머리길 5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10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38번길 8-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45-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38번길 1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38번길 14-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54번길 1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22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41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109번길 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81번길 1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	전라남도 목포시 도룡길 2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들목로 1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107번길 1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7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8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4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9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4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0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31번길 12-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1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31번길 12-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2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18번길 10-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3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22번길 1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4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46번길 3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25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5	르5번길 5-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6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심	d로5번길 1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7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	메터로 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8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	메터로 29-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29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기	ll터로 29-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0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	기로 70-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1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	· [일 2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2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회	<u> </u>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3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	배로337번길 2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4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	H로56번길 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5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되	≝ 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6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되	<u> </u>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7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되	= 2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8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되	≟ 2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39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되	= 67−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0	전라남도 목포시 번화되	르79번길 16-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1	전라남도 목포시 복산길	l12번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2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경	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3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회	르74번길 14-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4	전라남도 목포시 불종대	내길9번길 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5	전라남도 목포시 산계곡	<u>l</u> 4-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6	전라남도 목포시 산계길	<u>l</u> 9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7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회	르78번길 8-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8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회	= 2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49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5	<u> </u>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호	E 12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5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3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26번길 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3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26번길 5-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26번길 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5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26번길 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6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26번길 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37번길 8-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8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언덕로 13-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59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언덕로 13-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언덕로 38-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1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 1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2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 2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3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 40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4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112-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5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18번길 20-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6	전라남도 목포시	삽진산단로 86-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7	전라남도 목포시	섶나루길 16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8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23-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69	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27-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0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12번길 3-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1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12번길 3-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2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6-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3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4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7-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5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6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10-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77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8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안길 11-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79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15번길 17-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0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41번길 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1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41번길 7-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2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12번길 2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3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4번길 22-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4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4번길 2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5	전라남도 목포시 수강로4번길 34-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6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47번길 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7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77번길 14-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8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 7-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89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2번길 5-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0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1	전라남도 목포시 안태길14번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2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56-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80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4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20-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5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43번길 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6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43번길 8-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7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48번길 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8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33번길 20-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99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3-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0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산길 2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123번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2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23번길 15-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03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30번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4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 36-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5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 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6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 4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7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 49-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8	전라남도 목포시	열린길43번길 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09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59-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41-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1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0번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0번길 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10번길 3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50번길 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57번길 1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6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71번길 1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7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97번길 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8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97번길 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19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97번길 1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39번길 9-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1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40번길 23-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92번길 12-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3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73번길 24-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4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2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5	전라남도 목포시	온남길3번길 1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6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21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7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326-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28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263번길 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29	전라남도 목포시 용두로10번길 16-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0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 8-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1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51번길 28-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2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동로 4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3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로6번길 19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4	전라남도 목포시 원호길7번길 6-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5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 64-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6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 1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7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16번길 2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8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42번길 3-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39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62번길 5-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0	전라남도 목포시 율도길 17-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1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9번길 1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2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 6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3	전라남도 목포시 잔등로 1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4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136번길 1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5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42-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6	전라남도 목포시 중화길13번길 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07-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8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10번길 10-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49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13번길 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1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31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2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197번길 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3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87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9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55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2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6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3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7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11-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8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35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59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5-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0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15-4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1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18-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2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30-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3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30-1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34-2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5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139번길 23-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6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4-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7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35-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8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38-6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69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39-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70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9번길 18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71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12번길 12-1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
172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31-3	2022. 5. 23.	건축물대장 말소